

원장의 출퇴근 교통비, 경비 처리 될까?

병의원에서 경비 처리 되는 항목 총정리

글 백길현 사진 셔터스톡





최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어떤 것들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항상 궁금했다. 이참에 어떤 경비가 병의원의 세무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항목별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① **인건비** 페이 닉터, 간호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코디네이터, 사무장 등의 급여로 4대 보험 공제 전 총급여액
- ② **퇴직금** 실제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불입액
- ③ **임차료** 병의원 건물과 기숙사 임차료
- ④ **의약품비**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재고 관리가 필요한 큰 금액의 의약품으로, 매출원가로 신고)
- ⑤ **의료소모품비**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소모성 의료소모품(재고 관리가 필요 없는 판매관리비로 신고)
- ⑥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식대, 유니폼비, 회식대, 축의금, 학원 수강비 등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⑦ **여비교통비** 직원들의 외근 및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와 차량이 없는 원장의 출퇴근 경비
- ⑧ **접대비** 세법상 접대비 한도 범위 내 금액
- ⑨ **차량유지비** 병의원 등록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의 경비
- ⑩ **소모품비** 병의원을 위해 사용되는 문구류, 사무용품비 등의 경비
- ⑪ **지급수수료** 카드수수료, 세무기장료, 방범용역비, 프로그램 사용료, 기타 지급된 수수료
- ⑫ **감가상각비** 병의원에서 구입한 자산에 대한 세법상 연간 한도 내 금액
- ⑬ **이자비용** 병의원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⑭ **보험료** 병의원을 위한 화재보험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병원자동차보험료, 직원들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예전에는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최근에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 상 보험료 항목으로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⑮ **세금과 공과** 병의원에서 지출한 의사면허세,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공과금 성격의 경비

⑯ **통신비**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택배비, 마케팅을 위한 직원 스마트폰 사용료 등

⑰ **전력비** 전력요금, 기숙사 전력비

⑱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 진료를 위한 도서 구입비, 대기실 잡지 구입비, 판촉물 비용, 병의원 차트와 명함 인쇄비 등

⑲ **광고선전비** 광고료로 지급된 비용으로 과도한 광고선전비 지급은 세무조사 유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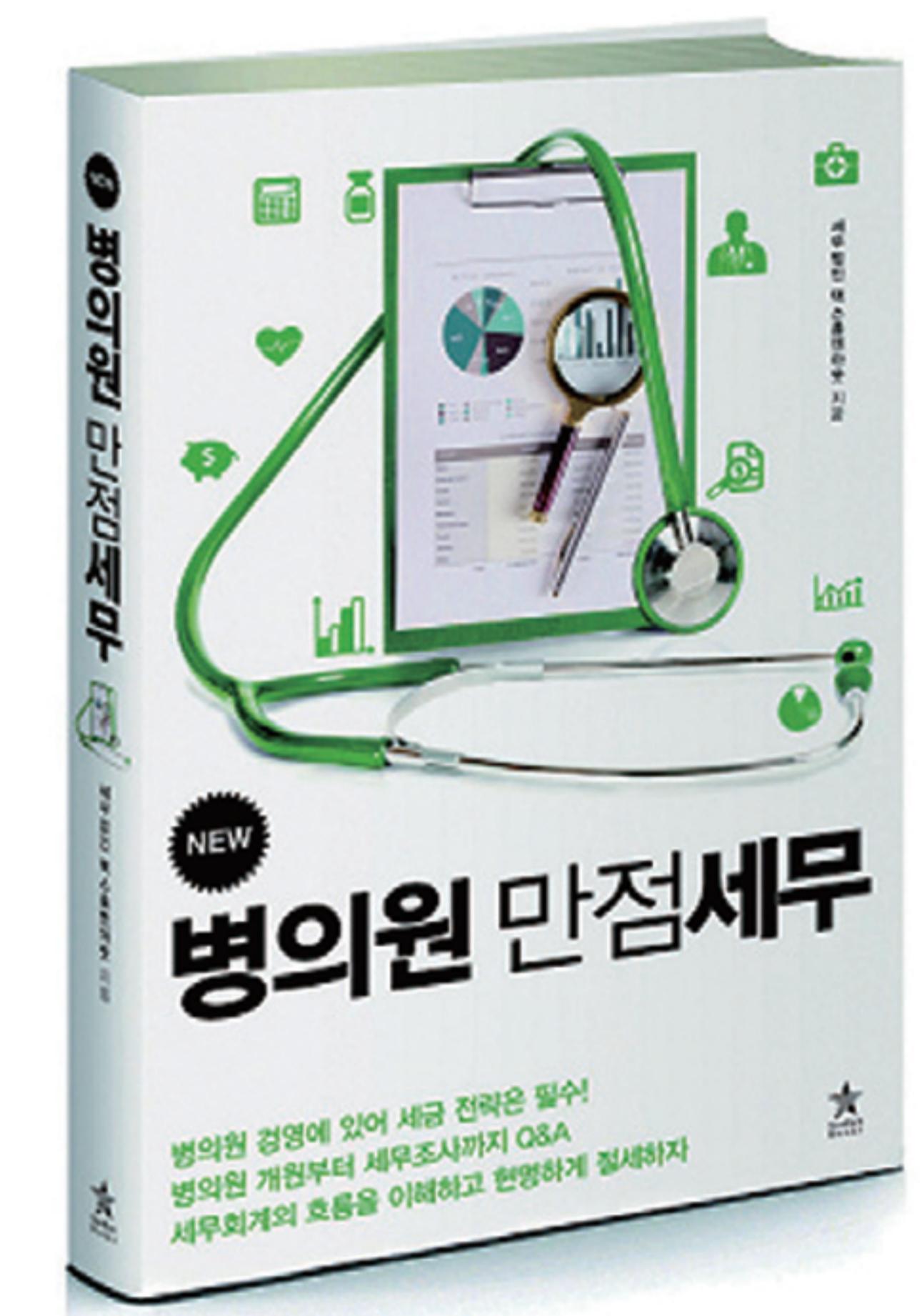
⑳ **리스료** 의료장비 리스료, 차량 리스료

협회비 의사회 협회비 등

잡이익, 잡손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후 삭감되거나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의료사고 배상비용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 등을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의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부금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기부금으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기부금에 대한 한도는 복잡하지만, 쉽게 대략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순이익)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백길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자문세무사이자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TAX HOME & OUT) 상무이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보건신문〉, 〈덴탈아리랑〉, 〈치과신문〉 등에 세무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병의원 세무 강의를 다수 해왔다. 저서로 《병원 만점 세무》가 있다.